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96

발의연월일: 2021. 3. 8.

발 의 자 : 김주영・야수잔비・송옥주

박상혁 • 김진표 • 김상희

박대수 · 유미향 · 홍기워

정청래 • 양기대 • 박홍근

임호선 • 전혜숙 • 김승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9년 기준 821만명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준비 없는 고령화는 노인들로 하여금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초래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수명 간의 격차가 평균 12년이나 되어 건강한 노년의 삶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건강한 노년을 향한 권리의 한 부분으로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의 「국민체육진흥법」은 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노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열망과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노인체육은 체육을 통한 건강한 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기존의 체육종목과 구분하여 느림, 부드러움, 즐거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적 체육활동으로 말함.

노인체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사회적 약자로 구분, 법정 법인화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노인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8조, 제22조, 제34조의2, 제42조 및 제43조의2).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가목 중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대한노인체육회, 시·도노인체육회 및 시·군·구노인체육회(이하 "지방노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대한장애인체육회에"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노인체육회에"로 한다.

법률 제1785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2항 중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대한노인체육회, 지방노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대한노인체육회 및지방노인체육회"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 중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대한노인체육회, 지방노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대한노인체육회) ① 노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 대한노인체육회(이하 "노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노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2. 노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 3. 노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노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4.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 5. 노인 선수, 노인 체육지도자의 복지 향상
- 6. 그 밖에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노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노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노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인 지방노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노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노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노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 ⑤ 노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노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 ⑦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⑧ 노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⑨ 노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중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을 "노인체육회, 지방노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를 "대한 노인체육회, 지방노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로 한다.

법률 제1785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 중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를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고인체육회 및 지방노인체육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노인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는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노인체육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노인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체

육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대한노인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체 육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노인체육회가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 ⑥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대한노인체육회의 임직원으로 보며,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9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	
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	가
회, 시·도체육회 및 시·	
군・구체육회(이하 "지방	
체육회"라 한다), 대한장	
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	
체육회 및 시・군・구장애	
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	
인체육회"라 한다), <u>한국</u>	<u>대한노인체육</u>
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	회, 시・도노인체육회 및
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시・군・구노인체육회(이하
	"지방노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10. (생략)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 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 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 나 <u>대한장애인체육회에</u> 가맹 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 12. (생 략) 법률 제1785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에 대한 보조) ① (생 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전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10. (현행과 같음)
11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노
인체육회에
<u> </u>
,
11의2. ~ 12.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85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
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 음)
음)
음)
© ————————————————————————————————————
음) ② -대한노인체육회, 지방노인체육
© ————————————————————————————————————
음) ②대한노인체육회, 지방노인체육 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지방체육회, <u>대한장애인체육회</u>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 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 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9. (생략)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단체의 운영·지원

11.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u><신 설></u>

대한장애인체육
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대한노인
체육회 및 지방노인체육회
<u>.</u>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u>.</u>
1. ~ 9. (현행과 같음)
10
대한노인체육회, 지방
노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
ট্র]

11.•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대한노인체육회) ① 노
이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노인체육회 (이하 "노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1. 노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2. 노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국제 교류
- 3. 노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노인 전문체육 진흥을위한 사업
- 4.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 급
- 5. 노인 선수, 노인 체육지도자의 복지 향상
- 6. 그 밖에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노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 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노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노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인 지방노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 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 노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 방노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 치단체의 명칭에 "노인체육회" 를 붙여 사용한다.

- 5 노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 로 정한다.
- ⑤ 노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 ①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 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 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⑧ 노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⑨ 노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 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률 제1785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 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 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 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u>노인</u>
체육회, 지방노인체육회, 도핑방
지위원회나 진흥공단
대한노인체육
회, 지방노인체육회, 한국도핑방
지위원회나
법률 제1785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u>장</u>
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노인체육회 및 지방노인체육회-